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폐기물관리법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,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(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)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(안 제7조제1항제14호)하고,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의2제4항)하며,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,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(안 제8조의4제2호)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또는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한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매립할 수 없다.

제8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자.”를 “자.(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비알코올 음료점업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제외한다.)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휴게음식점영업”을 “일반 및 휴게음식점영업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
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 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①-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14.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 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허가(변경허가를 포 함한다)를 받거나 제29조제2 항에 따른 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또는 신고(변경신 고를 포함한다)한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 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것. 다 만,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(변 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(변 경승인을 포함한다)받은 처분 용량을 초과하여 매립할 수 없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 제8조의4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	제8조의4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

의 범위)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 (생략)
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. 다만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,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
가. (생략)

나.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

3. ~ 6. (생략)

의 범위)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자.

(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

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

중 비알코올 음료점업 및 아

이스크림 전문점은 제외한다.)

-----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일반 및 휴게음식점영업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~ ③ (생략) <u>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</u>	제11조의2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 1. <u>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</u> 2. <u>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</u> 3. <u>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</u> 4. <u>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49